제316회 서산시의회(임시회)
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

장애인 일자리센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▣ 서산시장 제출 (의안번호 제69호)

2026. 10.

행정문화복지위원회
전 문 위 원

〈장애인 일자리센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〉

검 토 보 고 서

Ⅰ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○ 의안번호 : 제69호

○ 제 출 자 : 서산시장

○ 제출일자 : 2026년 10월 8일

○ 회부일자 : 2026년 10월 13일

Ⅱ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안이유

❍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 및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필요

❍ 장애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참여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전문역량 활용 필요

❍ 장애인복지 및 직업재활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

❍ 일자리 제공에서 취업연계·사후관리까지 연계되는 통합적 장애인 고용지원체계 구축

2. 주요내용

❍ 위탁추진계획

- 위탁사무 : 장애인 일자리센터 사업
- 위탁예산 : 금77,930천원(시 100%)

(인건비) 일자리전담인력(1명) 기본급, 제수당, 4대보험, 퇴직적립금

(사무운영비) 여비, 수용비 및 수수료

(사업비) 취업자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,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(취업기회 확대), 바리스타 직업개발훈련

- 위탁기간 : 2027. 1. 1 ~ 2029. 12. 31.(3년)
- 선정방법 : 수탁자 공개모집

❍ 위탁사무내용

- 장애인 일자리 상담 및 취업지원
-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및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
- 장애인 구직자 및 구인업체 발굴·연계
- 장애인 취업 후 적응 및 사후관리
- 장애인 고용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
- 그 밖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

Ⅲ. 검토의견

1. 제안목적

○ 본 동의안은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

2. 주요내용

가. 민간위탁 근거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1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직업지도, 직업능력평가, 직업훈련, 취업알선,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《장애인복지법》

제21조(직업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, 직업능력 평가, 직업 적응훈련, 직업훈련, 취업 알선,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- 「서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서는 시장이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
-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,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, 비영리민간단체 등 관계 전문기관에 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- 같은 조례에서 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은 경우 그 절치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」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의 근거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

《서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》

제5조(장애인 일자리센터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일자리 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센터 관리·운영업무를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,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,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4조에 의거 허가·등록된 단체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」를 따른다.

나. 민간 위탁 사무의 적정성

- 「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」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에서 시장은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위탁할 수 있고
- 같은법 제5조에서는 장애인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에 대해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
- 장애인의 취업상담, 직업훈련, 취업연계, 취업 후 적응 지원 등은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, 직업적 욕구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

《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》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시장은 소관사무 중 조사・검사・검정・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・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

제5조(위탁 대상사무) 제4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・**장애인**・여성・아동・ 청소년・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제공이 요구되는 분야로, 장애인복지 및 직업재활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

다.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위탁 기간 적절성 여부

- 「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」 제10조(수탁기관의 선정방법) 1항에서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함
- 같은법 제18조(위탁기간) 1항에서 위탁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
- 따라서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과 3년의 위탁기간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

《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》

제10조(수탁기관의 선정방법)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8조(위탁기간)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Ⅲ. 종합검토

가. 본 동의안은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

나.「장애인복지법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직업지도. 직업능력 평가. 직업훈련, 취업 알선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

다.「서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에서도 시장은 장애인 일자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

라. 또한「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」에서도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와 장애인 등 복지시설 및 직업훈련과 관련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등은 위탁사무로 정하고 있고, 민간 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동의안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

마. 장애인의 취업상담, 직업훈련, 취업연계, 취업 후 적응 지원 등은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, 직업적 욕구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분야로, 장애인복지 및 직업재활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

바. 다만 수탁기관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및 수행체계를 갖춘 기관을 선정하고, 위탁 이후에도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와 자립 기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성과 및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지도·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사. 상위법령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